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347-100001-01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Contents

Ⅰ 유아생활지도의 법적 근거 ····· 1
1. 법적 근거 체계 ····· 2
2. 관련 법령 ····· 3

Ⅱ 고시 해설서 개요 및 활용 안내 ····· 9
1. 해설서의 목적 ····· 10
2. 해설서의 활용 ····· 11
3. 관련 지원 및 문의 ····· 13

Ⅲ 고시 해설 및 지도 시 유의사항 ····· 15
제1장 총칙 ····· 16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 30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 41
1. 조언 ····· 41
2. 상담 ····· 45
3. 주의 ····· 51
4. 훈육·훈계 ····· 55
5. 보상 ····· 76
제4장 그 밖의 사항 ····· 79

Ⅳ 부록 ····· 91
1. 유아생활지도 관련 판례 ····· 92
2. 서식 예시안 ····· 96
3. 유치원규칙 예시안 ····· 104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I

유아생활지도의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 체계 2

2. 관련 법령 3

1 법적 근거 체계

법률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권 보장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유아생활지도)	유아생활지도의 분야·방법 및 신체 체벌 금지 명시
고시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6-7호)	유아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
학칙	유치원규칙	고시에서 위임한 구체사항
규칙	학급규칙	학급별 세부 사항

법적 근거 체계의 의의

- 유치원 교원이 이 고시에 따라 실시한 유아생활지도는 법령 및 유치원규칙에 근거한 교육활동에 해당함
- 다만 생활지도의 정당성은 고시의 형식적 준수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의 목적과 필요성·수단·방법의 상당성, 유아의 발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됨
- 유치원규칙은 법령과 고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학급규칙 역시 유치원규칙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야 함(상위법 우선의 법칙)

2 관련 법령

유아교육법

[시행 2026. 5. 19.][법률 제21658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9.〉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대통령령 제36252호, 2026. 4. 14., 일부개정]

제25조의2(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5. 1.][교육부고시 제2026-7호, 2026. 5. 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유치원 원장 등 교원에게 부여한 유아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느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 중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유아생활지도"란 유치원의 장(특수학교의 장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유아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또는 보호자와 소통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을 해결하고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모든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훈계"란 원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유아의 행동을 중재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 행동을 지적하여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보상"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원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유아와 보호자는 유치원규칙을 준수하고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치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원장은 유아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4조(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비언어적 상호작용 등의 모든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5조(조언)

①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1.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② 유아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원장과 교원은 유아에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상담)

① 원장과 교원, 유아 또는 보호자는 유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추가 지원을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호자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그 밖에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주의)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원장과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유아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훈육·훈계를 할 수 있다.

④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교원은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8조(훈육·훈계)

① 원장과 교원은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훈계할 수 있다.

②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③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유아를 분리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유아를 분리하는 경우 분리 장소에는 교직원 등이 있어야 하며, 분리 장소·시간 등의 세부사항은 유아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1. 교육활동 중 교실 내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2. 교육활동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른 유아의 안전 또는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를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자 인계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1. 유아가 제5항에 따른 분리 지도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유아가 제5항에 따른 분리 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⑦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기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⑧ 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⑨ 교원은 제5항제2호에 따라 분리하여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보상)

원장과 교원은 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 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제기)

①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원장은 이 고시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규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유치원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2027년 2월 28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Ⅱ

고시 해설서 개요 및 활용 안내

1. 해설서의 목적	10
2. 해설서의 활용	11
3. 관련 지원 및 문의	13

1 해설서의 목적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하였던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30호)는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7호)로 개정되었습니다.
-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라 원장과 교원에게 부여된 생활지도의 권한을 바탕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근거하여 유아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아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이 고시로 구체화됨에 따라 개정 내용에 대한 현장의 정확한 이해와 일관된 적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유아생활지도는 교원이 고시가 정한 범위와 방식 안에서 안정적으로 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유아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에 본 해설서는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7호)를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설과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본 해설서에서는 고시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과 지도 시 유의사항을 제시하며 유아생활지도의 방식에 대한 현장 적용 TIP을 추가로 제시하여 교원이 유아생활지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천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2 해설서의 활용

1 유아생활지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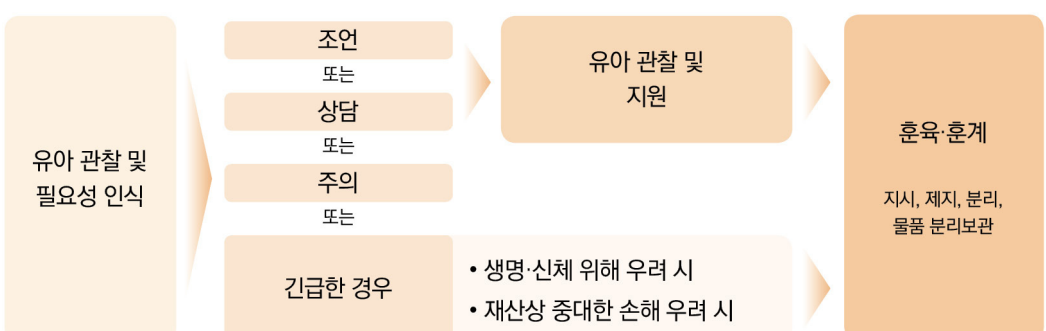
유아생활지도 범위

주체	시기	대상	지도 범위
교원	교육활동 중 수시	유아 보호자	• 학업 • 보건 및 안전 • 인성 및 대인관계 •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된 분야

유아생활지도 방식

지도 방식	
조언	말과 글로 정보 제공 또는 권고
상담	유아 지원을 위한 일체 소통 활동
주의	유아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등 지적·경고
훈육·훈계	지시·제지·분리·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한 행동 중재
보상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 부여

유아생활지도 절차



2 해설서 활용 시 유의사항

- 본 해설서에서 정의하는 용어는 일상적 어휘의 의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장과 교원은 이를 명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운영 시 유아와 보호자에게도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해설서에 수록된 '현장 적용 TIP'과 '부록'은 모든 유치원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기준이 아니라, 원장과 교원의 이해 및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한 참고용 예시 자료입니다. 장소,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및 범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위 유치원의 규모와 여건,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간소화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 해설서에 수록된 판례의 사실관계가 모든 유사사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일반화하거나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3 관련 지원 및 문의

교육부

-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제·개정
- 유아생활지도 권한 및 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개선(「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근거)
- 교육청 차원에서 판단이 어려운 법령 및 적용상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지원

시·도교육(지원)청

- 법령과 고시 범위 내에서 유치원 교원이 유아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유치원규칙 반영 여부 점검 및 교사 연수 등 현장 적용 방안 마련
-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치원이 갖추어야 할 제반여건 지원방안 마련 및 추진
- 유치원의 질의에 응대하고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상급 행정기관에 문의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 교육부)

유치원

- 교원의 유아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제반여건에 대한 수시 점검, 교직원의 유아생활지도 관련 의견 수렴 및 청취, 구체적인 지원 방안 모색
- 교육 3주체(유아, 보호자, 원장과 교원)에게 고시 내용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연수를 추진하고 교육기관의 총책임자로서 교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 발생 시 지도 대책 수립
- 고시 해석 및 적용에 대해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상급 행정기관에 문의
  (유치원 →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III

고시 해설 및 지도 시 유의사항

제1장 총칙	16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30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41
제4장 그 밖의 사항	79

제1장 총칙

1 목적

관련 조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유치원 원장 등 교원에게 부여한 유아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의 장*과 교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장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

- 이 고시에는 원장과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3주체의 책무 등이 규정됨
- 원장과 교원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유아의 생활 전반에 걸쳐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등의 방법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 이 고시는 원장과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고시에 근거한 원장과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 법령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함

판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관련 판례
사건번호	98도2389 판결
선고 법원 및 선고일	대법원 2000. 4. 25. 선고
판결 요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정의

1) 유아

관련 조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학적사항) 4.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2. 재학: 당해 유치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Q&A

Q **유치원에 입학 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입학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등원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고시의 적용을 받는 '유아'로 볼 수 있나요?**

A 본 고시에서 '유아'란 유치원 및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하므로, 입학 원서를 제출하여 입학을 지원한 상태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적은 「유아교육법」 제11조 및 해당 유치원규칙에 따른 모집·선발과 입학 절차가 완료되어 해당 유치원에 입학(학적 편제)한 때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시의 적용 여부는 학적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서 제출 후 선발 전이거나 유치원에 등록을 마쳤더라도 입학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적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입학일이 지나 학적이 생성된 유아는 아직 한 번도 등원하지 않았더라도 본 고시의 적용 대상인 '유아'에 해당합니다.

2) 교원

관련 조문

제2조(정의)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느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 중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원의 범위

구분	해당 인력	법적 근거
교원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제4항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교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기간제 교원(전일제·시간제 기간제교사, 방과후 과정 교사 등)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관련 법령

-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Q&A

Q 법령에 따라 유아생활지도의 권한이 부여된 교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라 교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에서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사의 임무를 수행하므로 고시상 교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

관련 조문

제2조(정의)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관련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 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참고 행위 예시

- 수업, 특별활동, 현장체험학습 및 체육대회, 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교육과정 이후에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 및 돌봄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원 시간의 활동
- 통학버스 승·하차 및 운행 중 활동
-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에 머무르는 동안 이루어지는 활동

Q&A

Q **교육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본 고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본 고시에서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에는 유치원의 교육과정이나 교육계획에 따른 활동뿐만 아니라, 등·하원 및 원장이 인정하는 행사·대회 참가, 휴식시간·점심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육활동은 유치원 내 수업 시간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현장체험학습 등 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등·하원 과정, 유아가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조언·상담 등도 교육활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의 교육과정·교육계획 또는 교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순수한 사적 활동은 교육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유아생활지도

관련 조문

제2조(정의)

4. "유아생활지도"란 유치원의 장(특수학교의 장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유아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Q&A

Q. 본 고시와 유치원규칙에 따라 유아에 대해 생활지도를 하였다면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2항은 원장과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신체적 학대)·제5호(정서적 학대)·제6호(방임)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본 고시와 유치원규칙이 정한 범위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생활지도는 이러한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고시가 정한 범위를 벗어난 생활지도나 고시의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된 유치원규칙에 근거한 생활지도는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5) 생활지도의 방식: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관련 조문

제2조(정의)

5. "조언"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또는 보호자와 소통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을 해결하고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모든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훈계"란 원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유아의 행동을 중재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 행동을 지적하여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보상"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목적

- **(조언)**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건전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상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원장과 교원, 유아, 보호자가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의)** 유아의 행동으로 인해 위험·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유아의 행동을 지적하거나 경고하여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훈육·훈계)**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식으로 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직접적·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유아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상)** 유아가 바람직한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칭찬이나 격려 등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내적 동기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원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설

• 교육 3주체의 정의

- 유아란 유치원 및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함
- 교원이란 교육적 전문성을 지닌 자로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느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교장을 포함하여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사람을 말함
- 보호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아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함

• 교육 3주체의 책무

- 교육 3주체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의무를 다해야 함
- 교육 3주체는 다른 주체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함

1) 유아의 책무

관련 조문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② 유아와 보호자는 유치원규칙을 준수하고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해설

- 유아의 책임
  - 유아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르도록 노력해야 함
  - 유아는 타인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유아는 타인을 존중하고 규칙과 약속을 지키며 안전한 유치원 생활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유아의 권리
  - 유아는 안전하고 발달에 적합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으며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함
  - 유아는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여야 함
  - 유아는 안전한 유치원 환경 및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음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4대 기본권리

-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 보호권: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 및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관련 법령

- **책임**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3항

- **권리**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유아교육법」 제21조의2(유아의 인권보장) 제1항~제2항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제1항~제4항

Q&A

Q **제2항에서와 같이 유아에게 유치원규칙 준수의 책무를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A 타당합니다. 다만 유아와 보호자의 책무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보호자의 책무는 「유아교육법」 제21조의4가 규정한 법률상 의무를 확인한 것입니다. 반면 유아의 책무는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의 취지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이 유치원규칙을 생활지도의 규범적 기초로 삼는 구조를 확인하는 선언적 규정입니다.

더불어 「유아교육법」상 유아에 대한 징계 제도가 없으므로, 위반에 법적 제재가 따르지 않으며 이 조항은 교원이 유아로 하여금 규칙을 배우고 내면화하도록 지도하는 근거로 기능합니다. 유아에게 규칙은 강제의 대상이기 이전에 그 자체가 교육의 내용이 됩니다.

2) 보호자의 책무

관련 조문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② 유아와 보호자는 유치원규칙을 준수하고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⑤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해설

• 보호자의 책임

- 보호자는 유치원규칙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하며, 유치원규칙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야 함
- 보호자는 자녀의 유치원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보호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 생활지도 관련 사항을 이해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예: 입학 시 보호자에게 유치원규칙 안내 후 보호자 확인, 교육과정 설명회 시 안내 후 보호자 확인 등

• 보호자의 권리

- 보호자는 유치원규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안내를 요청할 수 있음
- 보호자는 자녀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보호자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조언 및 상담을 기대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책임**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제3항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1항
「유아교육법」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 **권리**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제1항~제2항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제2항

Q&A

Q **제5항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이라는 목적 규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유아교육법」 제21조의4제3항은 보호자가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협력은 교육활동에 간섭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적극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 교원의 상담 요청 또는 사전 협의된 상담 일정에 응하는 것
- 유치원규칙과 생활지도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하는 것
- 자녀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가정환경의 변화 등 생활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유치원과 공유하는 것
- 분리, 귀가조치 등 고시에 따른 조치 시 유아 인계 등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는 것 등

그러나 고시에서의 적극적 협력은 교육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며 가정 내 양육 방식 등 그 밖의 영역에까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교육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며 이를 현저히 저해하는 반복적·부당한 요구나 지도 방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원장과 교원의 책무

관련 조문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③ 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치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원장은 유아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해설

• 원장과 교원의 책임

- 원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지도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교원은 생활지도 과정에서 모든 유아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원장은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할 때 유치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함. 또한 그 내용을 모든 교육 3주체에게 공표해야 함
- 원장은 교원의 교권침해 사례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경우 이를 축소·은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교원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 원장과 교원의 권리

- 원장과 교원은 유아를 정당하게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원장과 교원은 안전한 유치원 문화 조성과 교육활동을 위하여 유아와 보호자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음
-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학습권 및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정당하게 제재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책임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제3항~제4항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제1항~제4항

• 권리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제1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항~제3항

Q&A 1

Q **원장과 교원의 책무가 제3항에서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 두 주체 간 역할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A 제3항은 원장과 교원 모두에게 생활지도의 공동 책무를 부과합니다.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생활지도의 주체를 '원장 등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원장도 생활지도의 직접 주체입니다. 실제로 등·하원 지도, 행사, 급식 등 담임 학급 밖의 장면에서 원장·원감이 유아를 직접 지도하는 상황은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더해 제4항에서는 기관 운영 책임자로서 원장에게만 부과되는 추가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의 직접 주체로서 함께 참여하되, 원장이 기관 차원의 소통·지원 책무를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로 역할과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협력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A 2

Q **제4항의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에는 무엇이 포함되며, 원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A 제4항의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은 유아생활지도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공간, 지원 인력 등 여건 전반을 의미하며, 특정 시설이나 전담 인력의 확보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장은 원장실·자료실·유휴 교실 등 기존 공간이나 교실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 기존 교직원을 지원 인력으로 정하는 등 유치원의 규모와 여건에 맞게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유아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교원 또는 교직원의 보호·지도가 필요하므로, 분리 장소와 지원 인력 등을 유치원규칙에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인력 및 공간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 기존 공간의 용도 겸용 지정, 초등학교와의 협조 체계 구축, 교육(지원)청의 인력·예산 지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관련 조문

제4조(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비언어적 상호작용 등의 모든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해설

- 생활지도란 유아가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루도록 돕는 교육활동으로 유아의 생활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함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은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분야를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로 정하고 있음
- 제4조의 각 호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분야를 유치원 상황에 맞게 구체화한 것임
- 원장과 교원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음
- 원장과 교원은 개별 유아의 특성과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범위 외에 필요한 생활지도의 범위를 유치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해설

- 교원의 수업권과 유아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생활지도가 가능함
- 교원의 수업권이란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유아의 학습권이란 「교육기본법」 제3조에 따라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경험을 통해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함
- 교원의 수업권은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업권의 범위는 유아의 인격 형성 및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학습권 보호 및 보장이라는 전제하에만 행사될 수 있음

참고 행위 예시

- 다른 유아의 놀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다른 유아가 놀이 과정에서 만든 작품을 일부러 망가뜨림
- 물건을 부수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 다른 유아가 놀이하고 있는 놀잇감을 고의로 부수거나 망가뜨림
  - 책상, 의자 등 유치원의 시설·물품을 던지거나 내려쳐 파손함
- 부적절한 행동으로 주의를 분산시켜 원활한 수업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교실에서 긴 시간 동안 소리를 질러 다른 유아의 집중을 방해함
  - 장소 이동을 거부하여 교육활동 진행에 지장을 줌
- 장소를 이탈하여 무단으로 이동하는 행위
  - 교원이 인지하지 못할 때 유아 혼자 교실 밖이나 유치원 밖으로 이탈함
  - 교외 활동 중 교원의 동의 없이 유아 혼자 무리에서 이탈함

관련 법령

-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
-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제1항, 제2항, 제4항, 제3조(학습권) 제1항

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해설

- 유아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을 침해하여 학급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교원 및 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참고 소지 및 사용 제한 물품 범위 예시

- 소지 제한 물품의 범위
  - 연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유아 및 교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예: 칼, 가위, 장난감 칼·총, 레이저 포인터, 화학약품 등
  -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 교육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 예: 호루라기,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악기, 스마트폰, 녹음기, 태블릿PC 등
  - 안전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눈에 띄는 장신구 또는 액세서리, 고액의 현금, 고가의 장난감 등
- 물품의 사용 제한 범위
  - 교사의 허락 없이 각종 전자기기 등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을 녹음·녹화하는 행위
  - 교재·교구 및 소지품을 허용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여 교원과 다른 유아를 위협하거나 학급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관련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 금지) 제1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해설

• 유아 자신 또는 다른 유아 및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행위를 포함한 사항에 대하여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참고 행위 예시

• 건강에 해로운 식생활을 하는 행위
  - 안전하지 않은 음식을 먹음
  - 특정 음식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균형있는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치원에서 제공하지 않은 음식을 소지하거나 먹음

•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지 않는 행위
  - 다른 유아의 휴식을 방해함
  - 손과 몸 등을 씻지 않거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지 않음
  - 공용 물품의 비위생적인 사용 등 타인의 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관련 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음
  - 감염병이 발생했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등원을 함

관련 법령

• 「학교보건법」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항, 제9조의2(보건교육 등) 제1항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해설

• 유아기 발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을 포함한 사항에 대하여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참고 행위 예시

• 지능정보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행위
  - 특정 미디어 콘텐츠 시청을 반복적으로 요구함
  - 게임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며 다른 놀이 또는 활동 참여를 거부함
• 부적절한 미디어 콘텐츠를 접하는 행위
  - 공격성 또는 선정성을 포함한 콘텐츠를 시청함
  - 상업성 또는 사행성 요소가 포함된 플랫폼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함
• 유해한 약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 처방 없이 약물을 임의로 복용함
  - 독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연물을 채취하여 섭취함

관련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제2항제2호
• 「청소년 보호법」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제1항제1호~제6호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1항제1호~제5호, 제3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해설

• 유치원 안팎에서 유아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생활지도 할 수 있음

참고 행위 예시

•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에 위협 및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다른 유아 및 교원을 밀거나 때림
  - 물건을 의도적으로 던지거나 부숨
  - 타인을 향해 날카로운 물건을 휘두름
  - 자신을 스스로 학대함

• 유치원의 시설을 위험하게 이용하는 행위
  - 유치원의 시설 중 유아의 출입이 불가능한 공간에 무단으로 출입을 함
  - 유치원의 시설(놀이터, 계단, 복도 등) 또는 시설물(승강기, 난간 등)을 위험하게 이용함
  - 각종 탈것(자전거,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차량 등)을 위험하게 이용함

• 그 밖의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과의존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관련 법령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 안전교육) 제1항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해설

• 유아의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바람직한 습관과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태도·행동·예절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참고 행위 예시

• 다른 사람과의 예절을 지키지 않는 행위
  - 다른 유아를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않음
  - 놀이에서 특정 유아를 반복적으로 배제하거나 따돌림
  - 인사, 감사, 사과 등 기본적인 예절 표현을 적절하게 하지 못함
  -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거나 훔침
  -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지거나 불편함을 주는 행동을 함

•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는 행위
  - 음식을 함부로 다루거나 비위생적으로 식사를 함
  - 식사 중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유아의 식사를 방해함

• 공공장소의 차례와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
  -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손잡이를 잡지 않고 뛰거나 거꾸로 이동함
  - 현장체험학습 중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전시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훼손하려 함

관련 법령

•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제2호,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제3항

7 언어 사용, 비언어적 상호작용 등의 모든 의사소통 행위

해설

• 유아가 바람직한 의사소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적절한 언어 사용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하여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참고 행위 예시

• 부적절한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행위
  - 욕설 및 폭언, 비속어 등을 사용함
  - 지속적인 놀림, 조롱, 비하하는 말로 타인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함
  -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겁을 주는 말을 함
  - 상대방에게 반말이나 고성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

• 부적절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의도적으로 교사나 또래의 말, 표정, 몸짓을 반복하여 무시함
  - 눈짓, 표정, 몸짓 등으로 타인을 조롱하거나 비하함
  - 위협적인 자세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줌

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 개선

해설

- 유아 간 갈등이 발생한 경우 갈등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참고 행위 예시

- 갈등 상황에 부적절하게 대처하는 행위
  -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함
  -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반복함
-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어렵게 하는 행위
  - 특정 유아를 놀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소외시킴
  - 다른 유아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나 놀이를 강요함
  - 또래와 갈등을 반복하여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임
- 갈등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행위
  - 갈등 후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헤아리지 못함
  - 사과·용서·화해 등 관계 회복의 방법을 적절히 표현하거나 실천하지 못함
  - 갈등을 해결한 후에도 유사한 갈등을 반복함
  - 또래와 협력하거나 타협하지 못해 관계 회복에 어려움을 보임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해설

- 유아가 특수교육대상유아, 다문화유아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없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데 필요한 태도와 행동을 익힐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참고 행위 예시

- 특수교육대상유아를 편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배제하는 행위
  - 장애를 이유로 특정 유아와 함께 놀이하거나 활동하기를 거부함
  - 장애 특성을 흉내 내거나 놀림
  - 장애가 있는 유아를 조롱하거나 무시함
- 다문화유아를 편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 피부색·외모·국적·언어 등을 이유로 놀리거나 비하함
  - 다른 문화의 음식·의복·생활방식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비하함
  - 특정 국가나 문화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함
- 서로의 다양한 특성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행위
  - 자신과 다른 특성이나 문화를 가진 유아를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음
  - 서로 다른 생각이나 생활방식을 인정하지 않음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5항,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등) 제1항, 제5항

10 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해설

- 유치원은 지역의 특성 및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지도의 범위와 세부 내용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생활지도의 범위와 세부 내용은 교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음

참고 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예시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에서 정한 등·하원 시간을 지키지 않음
-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 하원 후 유치원 시설 및 타 학교급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함

관련 법령

- 「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규칙) 제1항~제2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1 조언

관련 조문

제5조(조언)

①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1.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② 유아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원장과 교원은 유아에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해설

- 조언이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을 통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포함)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의미함
- 조언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행동의 개선과 문제 상황의 예방 및 해결을 지원하는 일차적인 생활지도 방식임
- 유아에게 언어·발달·정서·행동 문제 등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관련 전문가의 검사·상담 또는 치료를 권고할 수 있음

지도 시 유의사항

- 조언에 앞서 유아의 상황과 행동의 원인을 충분히 관찰·파악하고 적절한 지원 및 해결 방향을 설정한 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유아의 개인차와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언어로 안내하여야 함
-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경우 체계적·지속적 관찰과 기록을 바탕으로 원장과 교원이 협의하여 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의 협력이 중요함
- 사생활과 관련된 조언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유아와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함

현장 적용 TIP

보호자 권고 절차의 예시

유아 관찰
- 유아의 행동, 또래 및 교원과의 상호작용 등에서의 반응 관찰

▼

기록
- 유아 행동 및 반응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 기록

▼

사전 협의 및 계획
- 원장 및 교사 등이 관찰한 기록을 바탕으로 유아의 상태와 상황을 이해 및 계획 수립

◀ **전문가 의견 청취**
-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에 문의 후 전문가 의견 청취
  ※ 예: 시·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

보호자 권고
- 교원의 전문적 판단과 관찰 기록을 바탕으로 보호자에게 권고

▼

전문기관 연계
- 필요한 경우 유아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과 연계

▼

사후관리
- 상담 및 진단 결과 공유 요청
- 유치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지원

조언을 활용한 유아생활지도 사례

사례 1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조언

상황

3세 유아가 편식이 심해 늘 먹던 음식만 먹으려 하고, 낯선 음식은 보기만 해도 고개를 흔들며 거부함

조언

- 점심으로 나온 새로운 음식의 색깔과 모양, 향을 소개하며 호기심을 유발함
- 각 식재료가 가진 효능을 이야기하며 음식을 골고루 먹었을 때 건강해질 수 있음을 조언함
- 교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정말 맛있다. OO이도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알려줄래?"하고 자연스럽게 권유함
- 거부 시 재촉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다시 먹어보자고 안내함

사례 2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조언

상황

4세 유아가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손을 헹군 뒤 교실로 돌아옴

조언

- 손 씻기 동영상을 통해 유아에게 올바르게 손을 씻는 방법을 알려줌
- 교사는 유아와 함께 동영상에 나온 손 씻기 노래를 부르며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어봄
-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세균을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음을 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조언함
- 다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손을 씻어보자고 권함

사례 3 전문기관 상담 및 치료를 권고

상황

5세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 단어가 한정적이며 자신의 의사를 말로 충분히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보임. 또한 교사,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놀이 참여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관찰됨

조언

- 유아의 언어 표현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원장과 교사가 함께 관찰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협의함
- 협의 과정에서 유아의 상태 및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청취함
- 관찰 기록을 바탕으로 보호자에게 유아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상태를 공유함
- 유아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언어치료 관련 전문기관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고함
- 보호자가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교육(지원)청에 문의한 후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안내함
- 전문기관에서의 치료와 더불어 유치원에서도 유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보호자와 공유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함

관련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제1항, 제3항

Q&A 1

Q **전문가의 개입과 지원 등을 위해 보호자에게 조언을 하였으나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문가의 개입과 지원 등에 대한 조언은 유아에 대한 꾸준한 관찰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호자에게 조언하기에 앞서 충분한 관찰과 자료에 근거하여 안내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안내한 경우에도 보호자가 자녀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수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복적인 안내는 오히려 보호자와 교원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안내를 기계적으로 반복하기보다 보호자의 수용 정도와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시기와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아의 유치원 생활 모습을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정기 상담 등 자연스러운 소통의 기회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전문 상담이나 치료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보호자가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Q&A 2

Q **보호자가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A 보호자가 관련 기관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교원은 유아의 상태에 맞는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안내할 수 있으며, 센터는 진단·평가와 상담·순회교육·치료 지원 등 관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서·행동 관련 어려움의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기관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는 유아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이므로 개별 면담 등 비공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은 진단명을 추정해 언급하지 않고 관찰한 사실을 중심으로 안내하되, 특정 사설 기관을 지정 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2 상담

관련 조문

제6조(상담)

① 원장과 교원, 유아 또는 보호자는 유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추가 지원을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호자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그 밖에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 상담은 유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장과 교원이 유아 또는 보호자와 함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일체의 소통 활동을 의미함
- 상담은 교육의 3주체가 유아의 문제 상황을 함께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함으로써 유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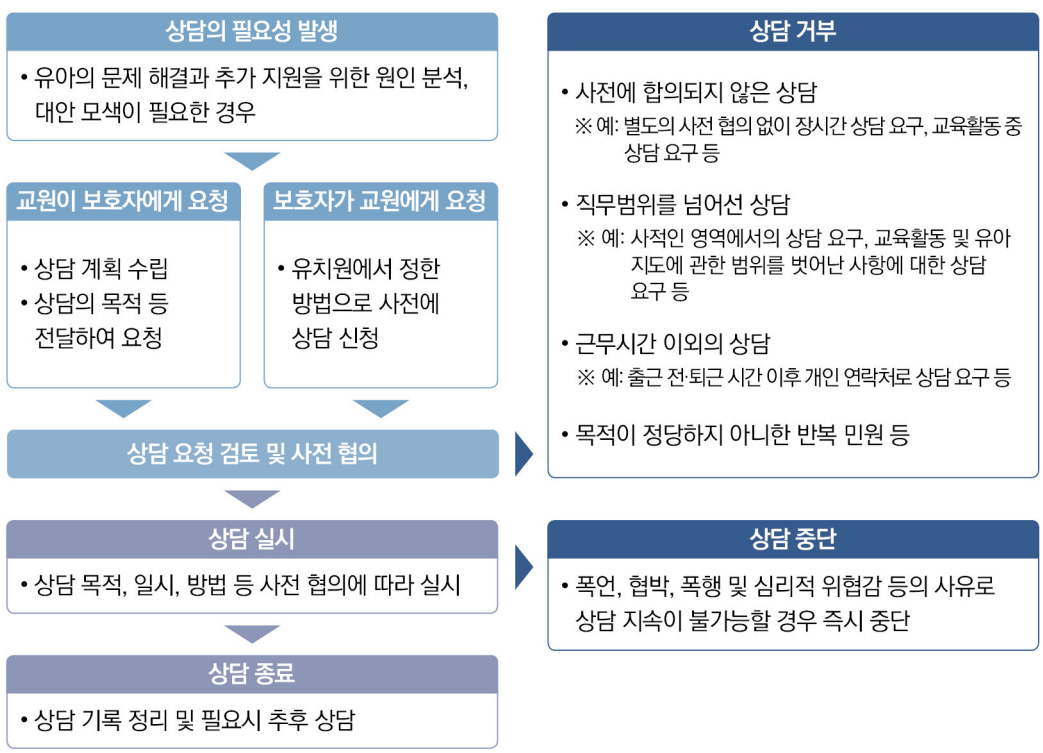
지도 시 유의사항

-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유아와의 상담은 정형화된 형식보다 일상적인 관찰과 놀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
-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일시·장소·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교원과 보호자의 상담은 유아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에 방해되지 않도록 수업 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상담 전 유아의 문제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장과 교원이 협의하여 상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교원은 보호자의 상담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 다만,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상담을 요구하는 등 원활한 상담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담을 거부할 수 있음
- 상담 중 상담 내용이 상담 주체 이외의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
- 다만, 상담 내용 중 다른 법령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가 있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상담 내용이 관계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
- 상담 중 보호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상담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을 즉시 중단하고 다른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상담의 결과는 상담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 연계, 추가 상담 등 후속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현장 적용 TIP

상담 절차의 예시



상담을 활용한 유아생활지도 사례

사례 1 자녀의 또래관계 확인을 위한 상담 요청

상황

보호자가 놀이터에서 자녀가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노는 듯한 모습을 보고, 유치원에서의 또래관계를 확인하고자 상담을 요청함

상담

- 보호자에게 상담의 목적과 내용을 들은 후 가능한 날짜를 협의하여 상담 일정을 정함
- 유아의 또래관계에 대한 관찰 기록과 놀이 참여 모습을 바탕으로 현재의 발달 상태를 설명함
- 유아가 또래와 함께 놀이하는 장면도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혼자 놀이에 몰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발달적 특성이 함께 나타남을 설명하여 보호자의 궁금증을 해소한 후 상담 종료함
- 상담 내용을 기록으로 남김

사례 2 보호자 폭언으로 인한 상담 중단

상황

4세 유아가 놀이 중 다른 유아와 장난감을 서로 가지려고 다투는 일이 있었음. 교사가 두 유아의 마음을 다독이며 화해하도록 지도하였고, 하원 전 양측 보호자에게 상황을 각각 설명함. 유아 하원 후 자녀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본 보호자가 유치원으로 전화하여 "우리 아이만 당하게 놔둔 것 아니냐.",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평생 교사 못 하게 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함

상담

- 보호자의 폭언으로 인하여 상담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상담을 즉시 중단함
- 상담 중단 사유와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원장에게 보고함
- 이후 원장과 담임교사가 상담 계획을 다시 수립한 후 보호자에게 상담을 요청함

❖ 안내 멘트 예시

"폭언을 계속하시면 정상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화가 나시겠지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히 말씀해 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더 이상 상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폭언을 계속하시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를 종료하겠습니다."

※ 통화 시작 시 녹음 사전고지 후 전체 녹음 가능, 통화 중에도 고지 후 녹음 가능
※ 1단계에서 폭언에 따른 통화 종료를 안내하고 즉시 종료도 가능

* 교육부, 경기도교육청(2025).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사례 3 유아의 전문기관 치료 진행 후 경과 공유를 위한 상담 요청

상황

5세 유아의 보호자에게 전문기관 상담 및 치료 권고 후 유아가 언어치료를 시작함. 치료 경과와 유치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교사가 보호자에게 상담을 요청함

상담

- 교사가 전문기관 치료 시작 이후 유아의 치료 경과와 가정에서의 지원 상황을 공유받고자 보호자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 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함
- 상담 전 유아의 관찰 기록과 사진 등을 미리 준비함
- 상담 시 보호자에게 유치원에서의 변화와 놀이 장면 등을 공유함
- 보호자로부터 치료실에서 연습하고 있는 단어와 의사소통 방법을 전달 받음
- 유치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기로 하며 상담을 종료함

Q&A 1

Q 상담 사전 협의 시 상담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A 상담신청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상담신청서는 상담의 목적과 내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질 높은 상담으로 이어가기 위한 상담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전화·알림장·문자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상담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담의 목적·일시 등에 대한 사전 협의 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협의 없는 상담 요청에 대해서는 원장과 교원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Q&A 2

Q 제3항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신고 또는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이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상담 내용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비밀 유지 원칙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① 상담 중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

② 법정 감염병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Q&A 3

Q 상담 시 녹음 및 녹화는 어떤 상황에 가능한가요?

A 상담의 녹음·녹화는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 전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학기 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상담 녹음·녹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아두었다면 이를 사전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상담 시작 시 녹음·녹화 사실을 다시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담에 참여한 사람 전원이 동의한 때에 한하여 녹음·녹화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녹음·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상담 내용을 몰래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를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항, 제2항제13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항제2호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참고 **교원과 보호자의 교육상담 가이드라인**

■ **일반 원칙**

-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을 하는 경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예의를 지키고, 사용하는 구어와 문장은 경어를 사용한다.
- 교원과 보호자의 상담 내용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유아의 교육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 교원과 보호자는 사전에 상담의 목적·일시·방법 등을 협의하고, 교원의 근무시간 중 수업 시간을 제외한 협의된 시간과 방법에 따라 상담한다.

■ **대면 및 전화 상담 원칙**

- 대면 상담은 원장이 지정한 안전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면 상담 장소에는 상담 중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벨 시스템 및 전화기, 상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알람 시계, 녹화 및 녹음 장비 등 상담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 등이 구비될 필요가 있다.
- 보호자는 전화 상담을 하려는 경우 유치원의 전화를 통해야 한다.

■ **문자 및 SNS 상담 원칙**

- 교원과 보호자는 상대에게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서는 아니된다.
- 문자 및 SNS 상담은 교원의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 간에 주고받은 문자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진, 동영상 등의 미디어를 보내서는 아니 된다.

■ **이메일 상담 원칙**

- 교원과 보호자는 상대방의 이메일 메시지에 성실히 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이메일에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호자가 이메일 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메일에는 상담 요청자 및 용건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진, 동영상 등의 미디어를 이메일에 포함하여 보내서는 아니 된다.

■ **원장 등 교원의 책무**

- 원장은 교원의 상담 활동에 필요한 상담시설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교원은 상담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유지하기 위해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참고: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6).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6).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한국교육개발원.

3 주의

관련 조문

제7조(주의)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원장과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유아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훈육·훈계를 할 수 있다.

④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교원은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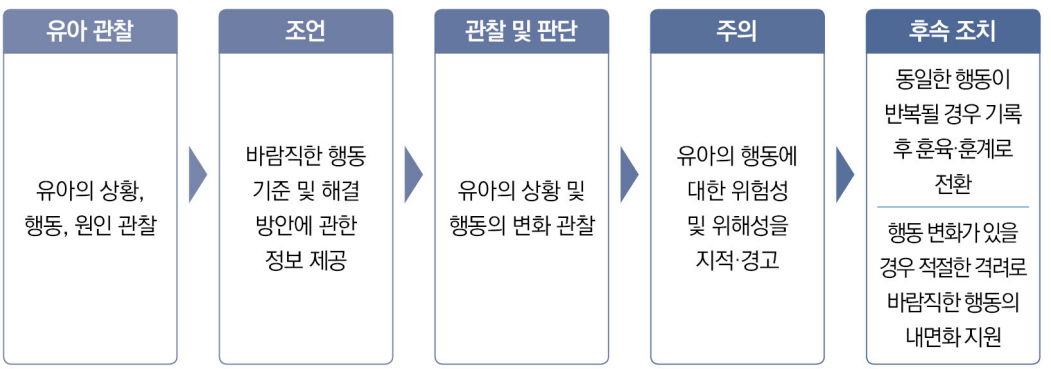
- 주의는 유아의 행동이 타인의 안전이나 다른 유아의 학습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동의 위험성이나 위해성을 지적·경고하여 유아가 이를 인식하게 하고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도 행위를 의미함
- 주의는 유아의 행동이 타인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깨닫고 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지도 시 유의사항

- 유아의 행동이 유아, 교원, 시설 등을 포함한 유치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성을 알리고 행동 변화 유도를 위해 실시하여야 함
- 주의는 유아의 행동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유아의 인격이나 특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주의는 공개적인 질책보다는 개별적인 지도를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유아가 다른 유아들로부터 부정적으로 인식되거나 낙인찍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유아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주의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음
- 주의를 준 사실만으로 필요한 조치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 후에도 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어 피해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훈육·훈계 또는 위험 요소 제거 등 상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여야 함
- 원장과 교원이 유아의 행동에 대하여 사전에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생활지도의 측면에서 교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현장 적용 TIP

주의 절차의 예시



※ 유아 행동의 위험성 및 상황의 긴급성,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지도 방식(예: 조언)과 병행하거나 즉시 주의를 줄 수 있음

주의를 활용한 유아생활지도 사례

사례 1 교실을 위험하게 이동할 경우의 주의

상황

3세 유아가 자유놀이 시간에 혼자 웃으며 원을 그리듯 교실 주변을 계속 뛰어다님. 바닥이 미끄러워 여러 차례 미끄러지며 넘어질 뻔함. 교실에서 뛰면 미끄러져 다칠 수 있으므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조언한 상황

주의

- 계속해서 뛰는 유아에게 다른 유아와 부딪혀 서로 다칠 수 있음을 말하며 교실에서는 뛰지 않도록 주의를 줌
- 교실에는 교구장이나 다른 유아 등 부딪힐 수 있는 요소가 많아 걸어서 이동해야 함을 설명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싶다면 놀이시간이 끝난 후 실외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음을 안내함

사례 2 녹음기를 소지하고 사용할 경우의 주의

상황

등원 지도 중 4세 유아가 바지 주머니에 작동 중인 녹음기를 소지하고 등원한 것을 확인함

주의

-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음을 유아와 함께 확인한 후,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허락 없이 녹음하면 안 된다는 점을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녹음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경고함
- (후속 조치) 녹음기는 유치원규칙에서 소지를 금지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제8조제7항에 따라 분리 보관함
- 원장에게 상황을 공유한 후 보호자에게 동의 없는 녹음의 위험성과 유치원규칙상 소지 금지 물품임을 안내하여 협조를 요청함

사례 3 뾰족한 물건을 소지하고 이동할 경우의 주의

상황

5세 유아가 그림을 그리다 연필의 뾰족한 부분을 바깥으로 향하도록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봄. 유아에게 연필은 자리에 앉아서 사용하고 이동할 때는 뾰족한 부분을 손으로 감싸 쥐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함을 조언함

주의

- 조언을 하였음에도 유아가 같은 방법으로 연필을 들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유아에게 다가가 다른 유아가 연필 끝에 찔려 다칠 수 있음을 말하며 연필을 바깥으로 향하게 들고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줌
- 연필은 자리에 앉아서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안전한 방법을 지켜야 함을 다시 안내함

관련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제4항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제3호, 제5호

Q&A 1

Q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에는 어떠한 것이 포함되나요?

A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은 수업 중 물품의 사용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 호루라기를 불어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스마트워치나 태블릿PC를 조작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지 제한 및 분리 보관 물품을 유치원규칙으로 미리 정하여 보호자에게 학기 초에 안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A 2

Q 유아에게 반복해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동하다가 다쳤다면, 교사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A 제4항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원장과 교원이 사전에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따르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생활지도의 측면에서 교원에게 요구되는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성립 여부를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의를 준 사실은 교원이 생활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근거로서,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교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성립 여부는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과 판례에 따라 사고의 예견가능성을 비롯하여 유아의 연령과 발달 특성, 사고의 시간과 장소, 주의 이후의 후속 조치, 시설·환경의 안전관리 상태 및 사고 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의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이후에도 유아의 위험한 행동이 계속되어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훈육·훈계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1항

4 훈육·훈계

관련 조문

제8조(훈육·훈계)

① 원장과 교원은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훈계할 수 있다.

해설

- 훈육·훈계는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유아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의미함
- 교원은 조언과 주의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였음에도 유아의 행동 및 정서의 조절이 어려운 경우 훈육·훈계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음
- 생활지도를 위해 훈육·훈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해야 함

지도 시 유의사항

- 유아의 전인발달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유아의 긍정적 행동 변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훈육·훈계 지도 시 개별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 훈육·훈계는 유아를 나무라거나 벌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유아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함
- 훈육·훈계가 필요한 상황과 훈육·훈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유아와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 유아를 훈육·훈계할 경우 폭언이나 체벌을 하지 않고 유아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함

1) 지시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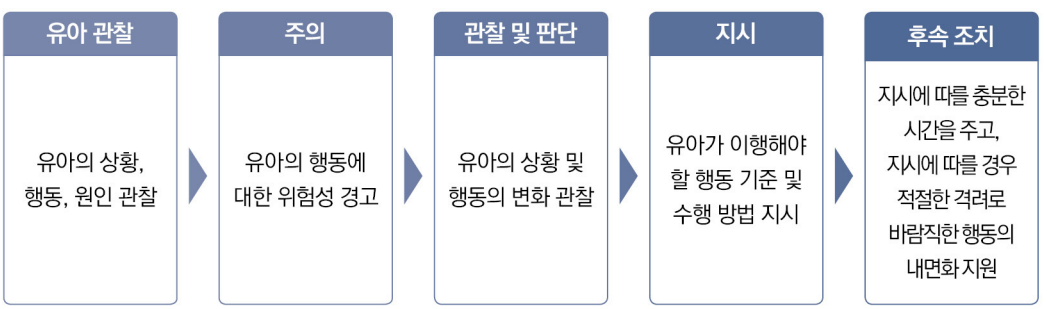
- 지시란 교사가 유아의 상황과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유아가 해야 할 행동 기준이나 방법을 구체적 언어로 직접 제시하고 이행을 요구하는 지도 행위를 의미함
- 지시는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을 중재하고 바람직한 행동의 실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유아가 이행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교육적 조치임

지도 시 유의사항

- 지시는 유아의 학습권 보장, 안전사고 예방 등 전인발달 및 안전한 유치원 생활을 위해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지시는 유아의 발달 수준, 언어 이해력 및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정신적·물리적 고통을 수반하는 지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함
- 지시 후 유아의 안전한 생활 및 유치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음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현장 적용 TIP

지시 절차의 예시



※ 유아 행동의 위험성 및 상황의 긴급성,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지도 방식(예: 주의)와 병행하거나 즉시 지시할 수 있음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지시) 비교표

기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지시)
근거 조문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방법		정보 제공 및 권고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모든 소통활동	행동 위험성 및 위해성 경고·지적	행동 기준 및 방법 제시·이행 요구
실시 시점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실시	• 상황이 안정된 후 별도 시간에 실시 • 원인 파악을 위한 대화는 상황 직후 현장에서도 가능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실시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실시
실시 상황		유아의 문제를 인식했을 때	유아 문제의 원인 파악 또는 지속적 지원이 필요할 때	타인 또는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을 때	조언·주의로 행동 중재가 어렵거나 즉시 행동 중재가 필요할 때
교원 개입 강도		낮음(권고)	낮음(협의)	중간(경고)	높음(이행 요구)
유아 참여 정도		수용 여부를 유아가 선택	해결방안 탐색에 유아가 참여	행동 중지를 요청하고 수용을 기대	제시된 행동의 직접 이행 요구
예시	**상황**	블록 쌓기 중 블록을 독점하려는 상황	블록 독점이 반복되어 놀이 후 이야기 나누는 상황	다른 유아가 불편함을 표하자 블록을 들고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상황	주의를 주었음에도 블록을 계속 움켜쥔 채 내려놓지 않는 상황
	발문	친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가볼까요?	왜 블록을 혼자 갖고 싶었나요?	블록을 던지면 친구가 다칠 수 있어요.	들고 있는 블록을 바구니에 담으세요.

※ 비교표의 생활지도 방식은 제시된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유아 행동의 위험성 및 상황의 긴급성,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도 방식을 병행하거나 즉시 훈육·훈계할 수 있음

지시를 활용한 유아생활지도 사례

사례 1 놀잇감을 던지는 유아에 대한 즉시 중지 지시

상황

3세 유아가 원목 블록으로 경사로를 만들던 중 블록이 무너지자 화가 나 경사로를 손으로 내려쳐 부숨. 교사가 블록이 튀어 다른 유아가 다칠 수 있음을 말하며 주의를 주었으나 블록을 던지는 시늉을 하며 머리 위로 들어 올림

지시

- 유아의 앞으로 다가가 블록을 즉시 내려놓을 것을 단호하게 지시함
- 블록을 던질 경우 다른 유아가 다칠 수 있음을 다시 설명하고, 화가 나도 던지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함을 설명함
- 흩어진 블록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함

사례 2 정리 시간에도 놀이를 지속하는 유아에 대한 정리 지시

상황

점심 식사 전 정리 시간을 안내하고 정리 노래를 틀어 정리할 것을 권했으나, 4세 유아가 블록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놀이함

지시

- 유아에게 다가가 5분 후 점심을 먹으러 갈 것임을 알리고, 레고블록을 정리함에 넣도록 지시함
- 주변에 흩어진 블록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정리가 끝나면 손을 씻고 줄을 서도록 안내하여 다음 행동을 순서대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함

사례 3 교실을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유아에 대한 복귀 지시

상황

5세 유아들과 실외놀이 전 안전 수칙에 대해 이야기 나누던 중 한 유아가 계속해서 교실 밖으로 뛰어나감. 교사가 자리로 돌아올 것을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교실 밖으로 나가는 행동이 반복됨

지시

- 유아에게 다가가 교사의 안내 없이 교실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분명하게 지시함
- 지금은 안전 수칙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임을 상기시키고 혼자 나가면 교사가 유아를 확인할 수 없어 위험함을 설명하여 교실 안으로 들어오도록 지시함
- 안전 수칙 이야기를 마친 뒤 다 함께 밖으로 나갈 것임을 안내함

Q&A 1

Q **유아의 안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 교사가 반복적으로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 어디까지를 정당한 지시로 볼 수 있나요?**

A 교사의 지시가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에 기반하고 있는지, 유아의 발달 수준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지시 역시 유아의 안전 확보나 바람직한 행동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생활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

Q&A 2

Q **조언, 주의, 훈육·훈계(지시)는 모두 유아에게 구두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알리고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조언, 주의, 지시는 언어를 통해 유아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예방적 지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교사의 개입 강도와 유아에게 요구되는 반응은 단계적으로 다릅니다. 조언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방식으로 유아의 수용 여부가 열려 있고, 주의는 유아의 행동에 대한 위험성 및 위해성을 지적·경고하여 유아가 자발적으로 행동을 조절하도록 유도하며, 지시는 조언·주의로 중재가 어려울 때 유아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즉각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2) 제지

관련 조문

제8조(훈육·훈계)

②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③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해설

- 제지란 유아가 법령이나 유치원규칙에서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할 때 이를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 언어적·신체적으로 개입하는 지도 행위를 의미함
- 유아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유치원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구두로 해당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제1호~제6호에 따른 행위
- 유아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해당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음

  ** 긴급한 상황: 유아가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함

  ** 긴급한 상황의 예: 다른 유아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계단, 난간 등 위험한 장소에 올라가거나 뛰어내리려는 경우
- 교원은 물리적 제지를 실시한 경우 지도 상황과 경위, 내용 등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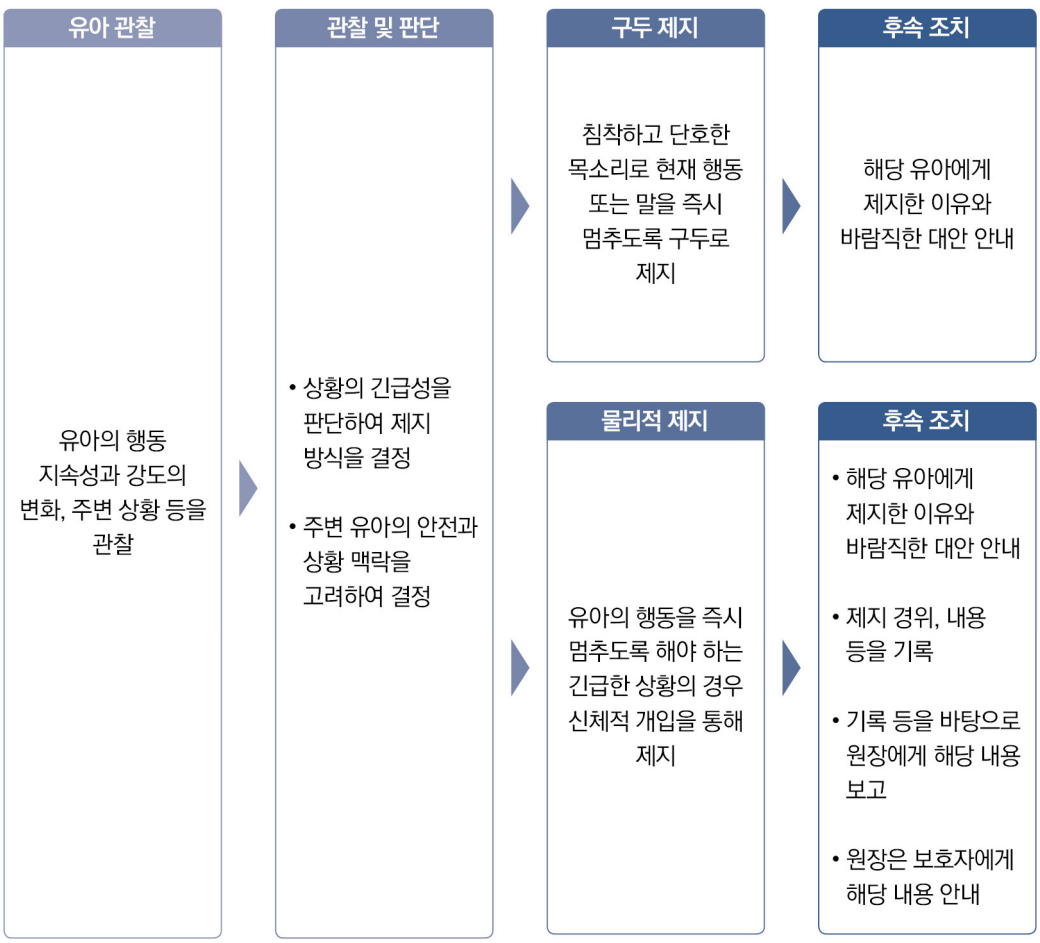
지도 시 유의사항

- 제지는 유아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교원은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대응하여야 함
- 구두 제지를 할 경우 유아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물리적 제지 전 구두 제지를 충분히 실시하는 것이 권장되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물리적 제지는 긴급한 상황에 유아의 안전 확보와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체벌과는 다르며, 체벌***은 금지되어야 함

  *** 체벌: 특정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
- 제지는 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유아의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실시하여야 함

현장 적용 TIP

제지 절차의 예시



※ 유아 행동의 위험성 및 상황의 긴급성,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즉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음

제지를 활용한 유아생활지도 사례

사례 1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는 행동에 대한 물리적 제지

상황

3세 유아가 교구장 위로 올라가 옆 교구장으로 건너뛰고 있음. 이를 발견한 교사가 내려오도록 지시하며 유아 쪽으로 신속히 이동함

물리적 제지

-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아를 팔로 감싸 안아 바닥에 내려놓음
- 유아와 눈을 마주 보고 교구장 위에 올라가서 뛰다 추락할 경우 크게 다칠 수 있음을 설명함
- 상황 종료 후 물리적 제지 실시 상황, 경위 등을 기록함
- 기록 공유와 함께 해당 상황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은 보호자에게 물리적 제지 발생 상황과 조치 내용을 안내함

사례 2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유아에 대한 구두 제지

상황

4세 유아가 놀이 시간 중 태블릿PC 사용 차례를 지키지 않았다며 다른 유아에게 "멍청아", "바보" 등의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 교사가 여러 차례 비속어 사용을 멈추도록 주의를 주었으나 계속해서 큰 소리로 말함

구두 제지

- 교사가 즉시 유아에게 다가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비속어 사용을 중단하도록 지도
- 비속어는 다른 유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됨을 설명하고, 화가 난 감정은 말로 표현하거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함
- 다른 유아가 차례를 지킬 수 있도록 상황을 조정함

사례 3 다른 유아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유아에 대한 물리적 제지

상황

5세 유아가 간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중, 뒤에 서 있는 유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돌아서 양손으로 그 유아의 목을 힘껏 조름

물리적 제지

- 교사가 즉시 달려가 유아의 양팔을 잡아 다른 유아로부터 분리함
- 한 번에 분리되지 않아 두 명의 교사가 함께 개입하여 해당 유아의 팔을 잡고 행동을 멈추도록 제지함
- 제지 직후 피해 유아의 상태를 먼저 확인한 후 유아들을 분리시켜 진정할 수 있도록 함
- 상황 종료 후 물리적 제지 경위, 내용, 시간 등을 기록함
- 기록 공유와 함께 해당 상황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은 보호자에게 물리적 제지 발생 상황과 조치 내용을 안내함

Q&A 1

Q 물리적 제지를 한 후에는 반드시 보고와 통지를 해야 하나요?

A 네. 필수 사항입니다. 물리적 제지가 발생했다면 해당 교원은 즉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원장은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증명하는 보호 조치이기도 합니다.

Q&A 2

Q 유아를 훈육·훈계할 때 반드시 조언, 상담, 주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 제지를 실시할 수 있나요?

A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니라, 유아의 발달 수준과 행동의 경중에 비추어 교원이 전문적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주의를 주었음에도 행동 변화가 없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훈육·훈계를 할 수 있으므로 교사 개입의 강도가 낮은 지도가 선행됩니다. 선행되는 지도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동에 대한 것이면 당일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선행 지도 없이 즉시 제지할 수 있습니다.

3) 분리

관련 조문

제8조(훈육·훈계)

⑤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유아를 분리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유아를 분리하는 경우 분리 장소에는 교직원 등이 있어야 하며, 분리 장소·시간 등의 세부사항은 유아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1. 교육활동 중 교실 내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2. 교육활동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른 유아의 안전 또는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를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자 인계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1. 유아가 제5항에 따른 분리 지도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유아가 제5항에 따른 분리 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⑨ 교원은 제5항제2호에 따라 분리하여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 분리란 유아가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치원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를 교실 안·밖의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는 지도 행위를 의미함
- 분리의 목적은 유아를 통제하거나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고 교육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
- 교실 내 분리는 교실 안 지정된 장소에서 교육활동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법임
- 교실 밖 분리는 별도의 지정 장소로 이동하여 유아의 신체적 행동을 조절하고,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분리 장소에는 반드시 교직원* 등이 있어야 함

  *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교원은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기간제교원으로 구분되며 교원 외 직원은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으로 구분됨

- 교원은 유아를 교실 밖으로 분리하여 지도한 경우 분리 상황과 경위, 내용 및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원장은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유아가 분리를 거부하거나 분리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다른 유아의 안전 또는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유아를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음

지도 시 유의사항

- 분리 장소, 시간, 지도 교원 등 세부 사항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해야 하며, 교직원 간 공유와 협의를 통해 분리 지도가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분리는 유아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분리된 유아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분리를 실시할 때에는 유아가 그 사유와 목적,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발달 수준에 맞게 설명하여야 함
- 분리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유아가 안정을 되찾은 즉시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교원은 분리된 유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 유아가 혼자 방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분리 이후에는 유아가 다른 유아 및 교원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찰하고 지원하여야 함
- 분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일과 운영, 물리적 환경, 지원 인력 배치 등 교육환경과 지원체계를 함께 점검하여야 함
- 교실 내 분리는 제9항에 따른 원장 보고 및 보호자 통지의 대상은 아니나, 분리가 반복되거나 교원이 분리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분리 사유와 경위를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 보호자 인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인계 사유와 경위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함

관련 법령

-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이 정하며,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현장 적용 TIP

분리 및 보호자 인계 절차 예시

사전 준비

- 유치원규칙 정비 및 협력 체계 구축
- 학기 초 보호자 사전 안내 및 동의
- 분리 장소의 환경 및 안전 점검

유아 관찰 및 판단

교실 내 분리

- 유아에게 분리 이유와 목적 설명
- 교실 내 지정된 장소에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행동·정서 조절 지원
- 유아의 행동·정서가 안정되는 즉시 교육활동 복귀

후속 조치

- 유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 및 지원

기록

교실 밖 분리

- 지원 요청 후 지정 교직원과 지정 장소로 이동
- 유아에게 분리 이유와 목적 설명 후 유아의 행동·정서 조절 지원
- 유아의 행동·정서가 안정되는 즉시 교육활동 복귀

원장 보고

유아 관찰 및 판단

- 유아의 분리 거부 또는 분리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활동 방해
- 다른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인계

- 분리 사유, 일시 및 경위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 후 인계 요청
-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교직원이 해당 유아를 보호하며 지도
- 보호자에게 인계 사유와 경위를 설명한 후 인계 사실 확인 및 유아 인계

후속 조치

- 보호자 인계 후 전화 상담을 통해 유아의 상태 확인
- 해당 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지원

기록

분리를 활용한 유아생활지도 사례

사례 1 큰 소리로 계속 우는 유아에 대한 교실 내 분리

상황

3세 유아가 놀이 중 사용하던 청진기를 다른 유아가 가져가자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함. 교사가 유아의 속상한 마음을 공감하며 지원하였으나 큰 소리의 울음이 지속되었고, 주변 유아들이 귀를 막고 놀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

교실 내 분리

- 유아의 속상한 마음을 공감해 주며,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함을 알림
- 교실 내에 마련해 놓은 푹신한 의자로 함께 이동하여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 시간을 줌
- 교사는 유아 가까이에서 상태를 살피며 감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유아가 울음을 멈추고 감정이 안정되면 이전 상황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눈 후 놀이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사례 2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유아에 대한 교실 밖 분리

상황

5세 유아들이 함께 메모리 게임을 하던 중 한 유아가 게임에서 지자 들고 있던 카드를 던지며 화를 냄. 교사가 행동을 멈추도록 제지하였으나 의자를 들어 던지려 하고, 이를 말리던 교사를 할퀴는 행동을 보임

교실 밖 분리

- 다른 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교실 밖 분리를 결정함
- 교무실에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하고, 교실로 온 원감과 함께 유아를 교무실로 분리함
- 교무실에서 원감이 유아에게 화가 난 이유를 묻자, 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자를 발로 차며 “내가 잘못한 것 아니라고!” 하며 소리를 지름
- 원감은 유아의 안전을 확인하며 감정이 진정될 수 있도록 지원함

사례 3 교실 밖 분리에도 진정이 되지 않는 유아에 대한 보호자 인계

상황

교무실로 분리한 후에도 5세 유아의 감정이 진정되지 않아 컴퓨터를 발로 차거나 원감에게 침을 뱉는 등 지속적으로 위험 행동을 보임

보호자 인계

- 원감이 원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원장이 유아의 상태와 분리 경위를 확인함
- 원장이 보호자에게 유아의 행동과 생활지도 경위를 설명하고, 유아가 행동 및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보여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안내한 후 가정학습을 요청함
-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원장실에서 원장이 유아를 안전하게 지도함
- 보호자가 도착한 후 유아의 현재 상태와 생활지도 과정 및 조치 내용을 설명하고 보호자에게 유아를 인계함
- 교육과정 시간 이후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유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정과 연계한 이후의 지도 방향을 함께 논의함

Q&A 1

Q 분리 '장소'와 '시간'은 교사가 상황에 따라 임의로 정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분리의 장소, 시간, 지도 인력 등 세부 사항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교원은 유치원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분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유치원규칙에는 분리 장소(예: 교실 내 안정 공간, 교무실 등 교원 및 교직원 등의 보호가 가능한 장소), 분리 시간의 상한, 분리 중 유아를 지도할 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이 아직 유치원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교사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원장은 2027년 2월 28일까지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Q&A 2

Q 지원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병설유치원에서 교실 밖 분리 시 누가 유아를 지도해야 하나요?

A 제8조제5항에서는 분리 장소에 '교직원 등'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등'에는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뿐만 아니라 제2항에 따른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인력이 부족한 병설유치원의 경우 교감, 교무실 및 행정실 직원, 보건교사 등 초등학교 교직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가능한 인력과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유치원규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필요한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A 3

Q 교실 내 분리를 실시한 경우에도 원장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A 제8조제9항에 따른 원장 보고 및 보호자 통지 의무는 제5항제2호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교실 내 분리를 매번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안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분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분리 과정에서 유아가 심하게 울거나 불안, 거부 등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등에는 교원의 판단에 따라 보호자에게 분리의 사유와 경위를 안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아가 가정에서 분리 상황을 단편적으로 전달할 경우 보호자가 상황을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원이 먼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가정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물품 분리보관

관련 조문

제8조(훈육·훈계)

⑦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기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해설

- 물품 분리보관이란 유치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아가 소지 및 사용하는 물품 중 요건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교원이 일시적으로 분리·보관하는 지도 행위를 의미함
- 물품 분리보관은 유아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안전 확보와 교육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 조치임

지도 시 유의사항

- 물품 분리보관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행위로 분리보관 대상 물품의 종류와 분리보관 절차, 방법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고 유아와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 물품 분리보관 시 유아에게 사유를 고지하고, 물품의 손상·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유자를 명확히 표기하여 관리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분리보관 일시·기간·사유·물품명 등을 기재한 물품 분리보관 기록지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위험 물품을 반복적으로 소지하는 경우 물품 분리보관에 그치지 않고, 보호자 상담 및 환경 조정을 통해 유아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현장 적용 TIP

물품 분리보관을 활용한 유아생활지도 사례

사례 1 가정에서 가져온 사탕을 나누어 먹으려는 경우의 분리보관

상황

3세 유아가 놀이 시간에 가방에서 보호자가 챙겨준 사탕 봉지를 꺼내 다른 유아들에게 나눠주려 함

물품 분리보관

- 유아에게 다가가 유치원에서는 정해진 음식 이외에는 먹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며, 잠시 보관해 두어야 함을 안내함
- 가져온 사탕 봉지를 유아와 함께 확인 후 하원 시까지 유아의 가방에 보관하도록 함
- 하원 시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개별적으로 가져온 음식은 유치원규칙에 따라 취식하지 않음을 안내함

사례 2 고가의 물품을 소지하고 등원한 경우의 분리보관

상황

4세 유아가 보호자의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등원하여 놀이 중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만지는 모습을 발견함

물품 분리보관

- 유아에게 다가가 놀이 중 목걸이가 분실되거나 파손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잠시 보관해 두어야 함을 안내함
- 목걸이를 벗어 하원 시까지 교무실에 마련된 물품 보관함에 넣고 유아의 이름을 적은 포스트잇을 붙여 함께 보관함
- 목걸이를 보관한 시간과 장소, 소유자를 기록으로 남기고 보관함에 넣은 사진을 찍어 기록함
- 하원 시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물품 보관함에서 목걸이를 꺼내 보호자에게 반환함

사례 3 개인용 태블릿PC를 꺼내 사용하는 경우의 분리보관

상황

5세 유아가 다른 유아와 선호하는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캐릭터를 보여준다며 가방에서 태블릿PC를 꺼내 인터넷 검색을 사용하기 시작함

물품 분리보관

- 유치원에서는 개인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상기시키고 하원 시까지 보관해 두어야 함을 안내함
- 유아에게 하원 시까지 교사의 책상 위에 보관할 것을 알린 후 해당 유아의 이름을 포스트잇에 적어 붙인 후 책상 위 책꽂이에 꽂아둠
- 하원 시 보호자에게 돌려주며, 개인 스마트기기를 보내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함

참고 **유치원규칙의 소지 금지 물품 예시**

-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칼, 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도구
  - 장난감 칼·총, 레이저 포인터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물품
  - 성냥, 라이터, 고데기, 드라이기 등 화기류 및 전열기구
-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일체
  -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일체
- 기타 소지를 금지한 물품
  - 고가의 물품 및 고액의 현금 등 분실·도난 고위험 물품
  - 녹음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
  -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개인용품 및 음식물

관련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제4호 가목 아래의 세부항목 1)~ 5), 나목 아래의 세부항목 1)~3)

Q&A

Q **유아 개인의 전자기기를 유치원에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유치원규칙으로 정하고 싶은데, 맞벌이하는 보호자 중에는 자녀의 안전이 걱정되어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품 분리보관과 관련하여 유치원규칙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A 유아들이 개인 전자기기를 가지고 오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등의 전자기기 소지와 사용 허용 범위에 대해 유치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원 후에는 전자기기를 가방에 넣어 보관하도록 하고,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5) 귀가 조치

관련 조문

제8조(훈육·훈계)

⑧ 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 귀가 조치란 질병 또는 건강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유아 본인 및 유치원 구성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하는 지도 행위를 의미함
- 유아의 질병이나 건강 문제에 대한 판단은 의학적 진단이 아닌 교원의 관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에 유아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를 권고할 수 있음

지도 시 유의사항

- 유아가 귀가하기 전까지 가능한 한 독립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공간은 교직원의 시야에 유아가 들어올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여야 함
- 원장은 유아 귀가 전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장소, 관리 절차, 유아를 지도할 교원 및 교직원 지정 등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귀가 요청 시 유아에게 나타난 증상(예: 발열, 발진, 구토, 황달 등)과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유아의 완전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귀가 후 유아 회복 상태를 가정으로부터 공유받을 필요가 있음

현장 적용 TIP

귀가 조치를 활용한 유아생활지도 사례

사례 1 수족구병이 의심되는 유아에 대한 귀가 조치

상황

3세 유아가 오전 간식으로 나온 오렌지를 한 입 베어 물더니 씹지 못하고 뱉어냄. 교사가 껍질을 벗겨 주었으나 계속 거부하여 입안과 손을 살펴보니 작은 수포성 발진이 보임

귀가 조치

- 발진 발견 즉시 원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함
- 다른 유아와 접촉하지 않도록 유아를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별도의 공간(원장실)으로 옮겨 휴식하도록 함
- 보호자에게 연락해 증상을 설명하고 전염 우려가 있어 귀가가 필요함을 안내함
- 보호자 도착 후 증상과 경과를 전달하고 의료기관 진료를 권유하며 인계함
- 이후 통화로 수족구병 확진을 확인하고 등원 기준을 안내함
- 일과 종료 후 교실과 놀잇감을 소독함

사례 2 복통 및 발열이 있는 유아에 대한 귀가 조치

상황

5세 유아가 점심 식사 후 복통을 호소함. 교사가 체온을 측정하니 37.5℃로 열이 있는 상황

귀가 조치

- 유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니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책장 옆 쿠션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였고, 1시간 후 재측정하니 38.2℃로 발열이 확인됨
- 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원장이 유아를 보건실로 데려가 휴식시킴
- 동시에 보호자에게 연락해 발열 정도와 상태를 설명하고 귀가가 필요함을 안내함
- 보호자 도착 전까지 유아의 상태를 관찰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
- 보호자 도착 후 증상과 경과를 전달하고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하며 인계함
- 교육과정 종료 후 보호자와 연락하여 유아의 상태를 확인함

Q&A 1

Q 귀가 조치 후 등원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주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후 다른 유아들에게 감염 우려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혹은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한 후 등원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원 기준과 제출 서류는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및 시·도교육청 지침,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Q&A 2

Q 보호자가 귀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호자에게 유아의 상태와 귀가가 필요한 사유와 감염 예방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속한 귀가를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보호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보호자와 연락한 일시와 안내 내용, 유아에 대한 조치 사항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도착하기 전까지 유아는 교직원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에서 보호하며 다른 유아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되, 유아를 혼자 두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유아에 대해서는 원장이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등교 중지를 검토할 수 있고, 법정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소 신고 등 관계 법령과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추가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아의 상태가 응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 신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지체없이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유아의 상태와 조치 내용을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감염병”,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 법정 감염병으로 인하여 결석하더라도 ‘출석인정’ 가능
  ※ 유아기 빈번히 발생하는 법정 감염병: 수두,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성각결막염, 성홍열 등
-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제1항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5 보상

관련 조문

제9조(보상)

원장과 교원은 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해설

- 보상이란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이나 성취를 알아차리고 유형·무형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유아가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 행위를 의미함
- 보상의 목적은 유아가 바람직한 행동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긍정적인 행동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있음

지도 시 유의사항

- 보상은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 자체에 초점을 두어 실시하고 결과뿐만 아니라 노력과 과정도 함께 인정하도록 하여야 함
- 보상은 유아의 발달 수준과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함
- 보상은 유아의 내적 동기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물질적 보상에 대한 의존이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보상을 행동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한 유아에게 수치심이나 좌절감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현장 적용 TIP

보상을 활용한 유아생활지도 사례

사례 1 공유하는 행동에 대한 칭찬을 통한 보상

상황

자기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 늘 블록 통을 자신 앞으로 끌어다 놓고 놀이하던 3세 유아에게 어느 날 다른 유아가 멀리 있는 블록 통을 가운데로 옮겨달라고 하자, 놀이 공간 가운데로 통을 옮겨 놀이함

보상

- 통을 옮긴 순간 바로 유아에게 다가가 "블록 통을 가운데로 옮겨서 OO이도 같이 쓸 수 있게 되었네."라고 어떤 행동이 바람직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 칭찬함
- 미소·눈맞춤 등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유아가 칭찬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바람직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유아의 행동이 다른 유아에게 준 긍정적 영향을 언급하여 나눔이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사례 2 노력의 과정에 대한 인정을 통한 보상

상황

4세 유아가 색종이로 개구리를 접던 중 모서리를 맞추어 접는 것이 잘되지 않자, 색종이를 구겨버림. 교사는 다른 색종이를 주며 여러 번 시도해 볼 것을 권유하였음. 유아는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색종이의 모서리를 어느 정도 맞추어 접었고 이어서 다음 단계의 접기를 시도함

보상

- 유아가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모서리를 맞추어 접으려고 시도할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는 등 비언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유아의 노력을 인정함
- 완성 여부나 접기의 정확성을 평가하기보다, "여러 번 다시 접어보더니 모서리를 맞추는 방법을 찾았구나."라고 말하며 유아가 노력하는 과정과 스스로 방법을 찾아낸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함
- 유아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는 필요한 만큼 도움을 제공하되 스스로 시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후에도 유아가 어려운 과제에 스스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일 때 과정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인정하여 외적 보상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시도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함

사례 3 협력 온도계를 활용한 전체 보상

상황

5세반 담임교사는 유아들의 결속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의 노력이 쌓여 학급 전체가 보상을 받는 형식인 '협력 온도계'를 운영하고 있음

보상

- 교실 벽에 100℃ 온도계 판을 붙이고, 유아 개인 또는 학급이 규칙, 약속 등을 잘 지켰을 때 온도를 1℃씩 올림
- 온도를 올리는 기준과 일정 온도까지 도달하였을 때의 보상은 학기 초 유아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정함
- 온도를 올리는 기준은 정리 타이머가 끝나기 전에 정리 마치기, 친구의 말 끝까지 듣고 말하기, 도움이 필요한 친구 도와주기 등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한 행동을 위주로 정함
- 보상을 받는 온도의 기준은 10℃로 하고 도달하면 '우리 반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보상 조건으로 정함 (예: 요리활동, 교실 캠핑놀이 등)
- 온도를 올릴 때는 교사가 임의로 올리지 않고 학급 유아들과 어떤 행동 덕분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눈 후 해당 온도에 자석을 붙임

Q&A

Q 특정 유아에게만 반복적으로 보상을 제공해도 되나요?

A 보상은 유아의 행동과 상황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특정 유아에게만 반복적으로 보상이 집중될 경우 다른 유아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비교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 개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균형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1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관련 조문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유치원규칙에 따라 기본적인 공중도덕과 질서 의식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의미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는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지닌 발달 특성과 장애 정도로 인해 유치원규칙을 다른 유아들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됨
- 원장은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배치된 통합학급의 담당교원과 특수교육교원 등이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적절한 생활지도 및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지도 방법, 긍정적 행동 지원, 보조공학기기 활용, 통합학급 운영 등

- 원장은 통합학급 담당교원과 특수교육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장애 정도와 특성, 유치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학급의 유아 수를 감축 조정하고,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 간 협력하는 유치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지도 시 유의사항

- 원장과 교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활동이 제한되거나, 분리·거부되는 등 차별적 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발달 수준을 파악하고, 과제 수행이 가능한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성인 또는 또래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문제행동을 지도할 때 교정적 접근보다는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 행동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

- 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5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직원 대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원장은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지원)청 행동중재지원단의 지원을 받거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음

  * 교수, 교육전문직, 특수교육교원(행동중재 관련 연수 이수 또는 자격 소지 교사 등), 치료사, 상담교사(상담사), 의사 등

- 원장은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 이때 일상적인 생활지도로 가능한 사항까지 일괄적으로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행동중재 지원의 수준에 따라 시·도교육(지원)청 행동중재지원단, 전문기관 및 가정 연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3항1호, 2호
-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제1항,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1항,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2항~제4항

현장 적용 TIP

특수교육대상자 유아생활지도 사례

사례 1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유아의 요구 표현 지도

상황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3세 유아가 다른 유아가 가지고 놀이하고 있는 스카프를 가지고 싶어함. 다른 유아가 들고 있는 스카프를 움켜쥐고 당기다가 당겨지지 않자, 상대 유아를 밀치는 행동을 보임

특수교육대상유아 생활지도

- 유아가 친구를 밀치는 행동은 '갖고 싶다'는 요구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 나타낸 반응임을 이해하고, 행동을 꾸짖기보다 요구를 표현하는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 데 지도의 초점을 둠
- 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쉬운 표현 방법을 정해 줌. 예를 들어 친구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요구가 적힌 그림카드를 건네는 방법을 알려주고 유아가 이 방법으로 표현하면 교사가 즉시 반응하며 "스카프 빌려줘."와 같은 짧은 말을 함께 들려줌
- '물건을 빌리고 싶을 때' 등 지켜야 할 약속을 그림으로 나타낸 시각적 규칙판을 학급에 게시하고 갈등 상황이 생기면 규칙판 그림을 가리키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줌
- 보호자와 협의하여 가정에서도 동일한 그림카드와 몸짓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행동이 지속될 경우 특수교육교원 또는 순회교원과 협의하여 지도 방향을 설계함

사례 2 청각장애 유아의 단체활동 규칙 지도

상황

청각장애로 보청기를 착용한 4세 유아가 바깥놀이 중 "모여 주세요."하고 말하는 교사의 구두 신호를 듣지 못함. 교실로 들어가기 위하여 다른 유아들이 모두 모인 후에도 혼자 미끄럼틀을 타다가 교사에게 발견됨

특수교육대상유아 생활지도

- 유아의 행동이 규칙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적 정보 접근의 어려움에 기인함을 이해함
- 이후 야외 활동 시 구두 신호와 함께 시각적 신호(깃발 들기, 약속된 수신호 등)를 사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병행하여 사용함
- 유아가 교사의 얼굴과 입 모양을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지시하며, 다른 유아에게는 대상 유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줌
- 유아가 함께 정한 신호에 따라 규칙을 수행함으로써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청기 상태 등 청각 관련 정보를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일관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함

사례 3 자폐성장애를 가진 유아의 활동 전환 거부 시 생활지도

상황

5세 자폐성장애를 가진 유아에게 놀이 시간이 끝나 정리 시간이 되었음을 안내하자, 들고 있던 기차를 꽉 쥐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엎드림. 교사가 유아 가까이 다가가 여러 차례 정리를 안내하였으나 활동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됨

특수교육대상유아 생활지도

- 활동 전환을 거부하는 행동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자폐성장애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고, 유아가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지도의 초점을 둠
- 타이머를 활용하여 정리 시간 10분 전, 5분 전, 1분 전에 정리할 것을 사전에 예고함
- 정리 시간이 시작될 때마다 동일한 음악을 틀어 정리 시간임을 인식하도록 일관된 루틴을 형성하고, 유아가 놀잇감을 하나라도 정리하면 즉시 구체적으로 칭찬함
- 거부 행동이 지속되는 경우 일과 규칙을 반복 지도하고, 특수교육교원과 상의하여 개별화교육계획과 연계함

Q&A 1

Q **바깥놀이에서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A 바깥놀이는 외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모든 유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유아가 단체 활동 시 활동 공간을 벗어나려고 할 경우에는 유아의 이름을 불러 주거나, 또래의 시범을 활용하거나, 유아가 선호하는 놀이나 음악을 활동에 포함하는 등 단체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리 이탈 행동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행동을 중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Q&A 2

Q **우리 아이가 꼭 특수교육대상유아와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는 학부모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A 통합교육은 유치원이 선택하는 운영 방침이 아니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 따른 법률상 원칙이며, 장애를 이유로 한 분리·배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이므로, 특정 유아와의 분리를 요구하는 문의는 수용할 수 없음을 정중하고 분명하게 안내합니다.

다만 문의에 담긴 보호자의 우려는 상담으로 다루어 통합교육이 모든 유아에게 주는 교육적 가치와 학급 지원 체계를 사실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 안내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러한 문의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관련 조문

제11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설

- 교원이 이 고시에 따라 실시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하여 유아 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 또는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 행위),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제1항~제2항,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제1항~제2항, 제26조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제1항~제2항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제1호~제6호

지도 시 유의사항

- 교원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아 또는 보호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불응으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경우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유아 및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유아에 대한 조치는 발달 특성과 교육적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현장 적용 TIP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예시

법령이 정한 행위	예시	근거 법령
「형법」상 일정한 범죄 행위	교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호
	교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유치원에 무단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등 교육활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호가목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유아의 위험 행동에 대한 제지 지도를 두고 앞으로 자녀에게는 일체의 생활지도를 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호나목

Q&A 1

Q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부정적인 표현으로 인해 교원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자의 이의제기 및 의견 제시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므로, 이를 무조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교원에게 모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제기

관련 조문

제12조(이의제기)

①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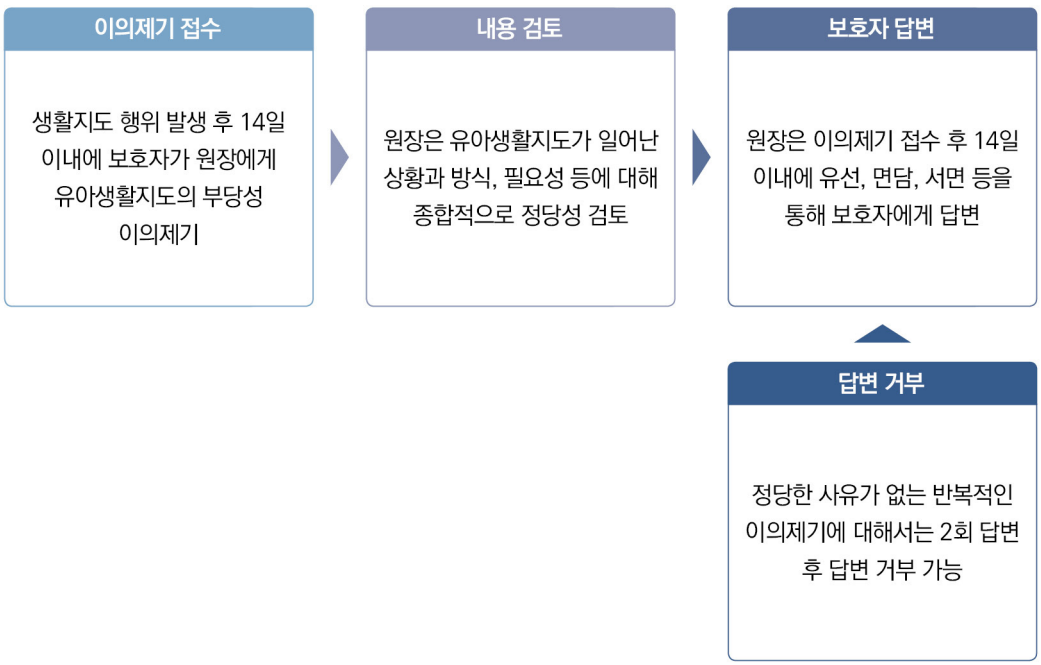
- 보호자는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원장에게 유선,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
- 원장은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 생활지도의 상황, 방식,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생활지도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호자에게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함
-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2회 이상 답변 후 추가 답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지도 시 유의사항

- 이의제기의 접수 및 답변은 개별 교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치원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창구를 일원화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생활지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현장 적용 TIP

이의제기 및 답변 절차의 예시



Q&A 1

Q **이의제기 및 답변 기한인 '14일 이내'에는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A 네. '14일 이내'의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이의제기 또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4 기타

관련 조문

제13조(기타)

원장은 이 고시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해설

- 「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라 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음
-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제4조(생활지도의 범위)
   - 제10호 '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제8조(훈육·훈계)
   - 제2항 '유치원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
   - 제5항 '분리 장소·시간 등 세부사항'
   - 제6항 '보호자 인계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
   - 제7항 '분리보관 가능한 물품'
3. 제13조(기타)
   -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지도 시 유의사항

- 교원은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지도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 원장은 유치원규칙의 제·개정 시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되 상위 법령 및 고시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유치원규칙은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각자의 권리와 책무를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 「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규칙) 제1항~제2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제1호~제9호, 제2항

5 재검토기한 및 부칙

관련 조문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규칙에 관한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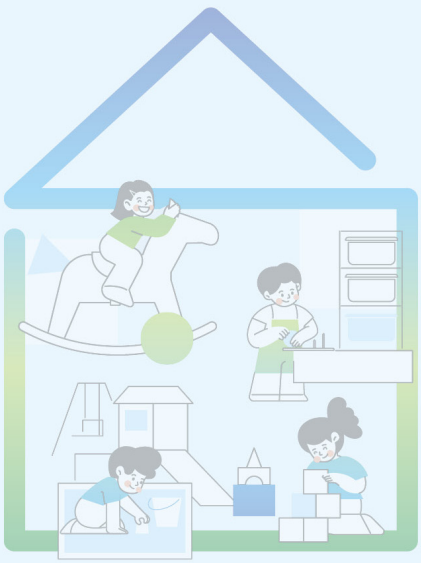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유치원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2027년 2월 28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해설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재검토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3년 주기로 현장 교원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종합 검토하며, 긴급히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기한과 관계없이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유치원규칙에 관한 특례는 이 고시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유치원규칙에 반영하기 전까지 원장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려는 것임

지도 시 유의사항

- 원장과 교원은 고시의 시행 과정에서 운영상의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기록하여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원장은 부칙 등에 따라 유치원규칙으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Ⅳ

부록

1. 유아생활지도 관련 판례	92
2. 서식 예시안	96
3. 유치원규칙 예시안	104

1 유아생활지도 관련 판례

1 유아생활지도 관련 아동학대 불인정 판례

판례 1

사건번호	2020고단2906 판결
선고 법원 및 선고일	울산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사실 관계	피고인은 유치원 담임교사임. 피해유아(4세)가 친구들과 다투었음에도 마스크를 쓴 채 말을 제대로 하지 않자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면서 턱을 밀친 후 마스크를 책상 위에 던지듯이 놓음. 이를 비롯하여 약 2개월간 총 17회에 걸쳐 피해유아를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다른 유아들이 보는 앞에서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로 기소됨
판단	정서적 학대 불인정
아동학대 불인정 근거	• 훈육 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고의적인 정서적 학대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음성이 없는 CCTV 영상만으로 학대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유아의 수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식판을 정리하게 한 행위 등은 대부분 유아가 교사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다른 유아의 놀이를 방해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이후 이루어짐 • 교사는 상당 기간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유아의 행동을 주시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등 지도하려는 모습이 다수 확인됨

판례 2

사건번호	2023노3831 판결
선고 법원 및 선고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사실 관계	피고인은 유치원 담임교사임. 유치원 F 반에서 피해유아(4세)가 점심시간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유아들에게 장난을 치거나 식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높이 약 28cm의 바닥에 앉아서 사용하는 책상을 교실 앞 공구장에 붙여 놓고, 그곳에 혼자 앉도록 하여 다른 유아들과 분리하여 밥을 먹도록 하고 피해유아 이외에 다른 유아들은 의자에 앉아서 사용하는 높이 약 53cm의 책상에서 밥을 먹도록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로 기소됨
판단	정서적 학대 불인정
아동학대 불인정 근거	• 다수의 유아를 지도하는 교사로서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 시간대에 유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판단으로 볼 수 있음 • 유아를 단순히 방치한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 또는 부담임교사가 가까운 자리에서 유아를 살피며 식사를 지원하였고, 유아에게 강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음 • 유아는 식사시간 전후 다른 유아들과 대화하거나 자유롭게 신체를 움직일 수 있었으며 소외된 상황도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분리 조치가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판례 3

사건번호	2022고합512 판결
선고 법원 및 선고일	대구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사실 관계	피고인은 유치원 담임교사임. 학급 내 피해유아(4세) 7명을 대상으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유아들의 귀 근처에서 113dB 정도의 소리가 나는 전자 호루라기를 작동시키고, 장난감으로 다른 유아에게 장난을 치거나 복도에서 뛰어다닌 유아들을 칠판 앞에 약 12~14분간 앉아 있도록 하였으며, 지도 과정에서 유아들의 배 부분을 손으로 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기소됨
판단	신체적·정서적 학대 모두 불인정
아동학대 불인정 근거	• 유아의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유치원에서 일괄 구매하여 배부한 전자호루라기를 교사가 부여된 목적에 맞게 사용함 • 유아들이 복도를 뛰어다니는 상황에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시간을 갖도록 칠판 앞에 앉게 한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적 지도를 목적으로 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배를 친 행위는 유아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행위가 다소 거칠거나 다른 지도 방식을 선택할 여지가 있었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긍정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학대나 폭력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판례 4

사건번호	2023고단2672 판결
선고 법원 및 선고일	울산지방법원2024. 5. 10. 선고
사실 관계	피고인A와 B는 같은 반(3~4세)을 맡은 유치원 담임교사임. 피고인A는 구연동화 수업 중 유아를 일으켜 동화 선생님 옆 의자에 약 23분간 앉혀 두었으며, 피고인B는 실내화를 던진 유아에게 실내화를 되던지고 바닥에 내리치며 야단치고 책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로 기소됨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행위 불인정 다만 피고인A와 B는 위 사실관계 외에 각각 8회 및 2회의 정서적 학대행위 사실이 인정됨
아동학대 불인정 근거	• 동화 선생님 옆 의자에 앉혀둔 행위 시 다른 유아들도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 앉아 동화를 듣고 있었고, 해당 유아 역시 자리만 달리하였을 뿐 수업에는 정상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실내화를 던진 행위에 있어 교사의 대응이 다소 부적절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실내화를 던지거나 책을 찢는 유아에게 예절을 가르치기 위한 훈육 방법의 하나로 볼 여지도 있어 학대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음

2 유아생활지도 관련 아동학대 인정 판례

판례 1

사건번호	2021고단1565 판결
선고 법원 및 선고일	대구지방법원 2021. 7. 7. 선고
사실 관계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유아(3세)가 밥풀을 책상 밑에 붙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유아의 왼팔을 잡은 다음 힘껏 끌어당겨 일어나게 하고, 피해유아가 눈을 맞추지 않자 다시 양손으로 양팔을 잡은 다음 힘껏 끌어내려 바닥에 주저앉힘. 양손으로 피해유아의 양팔을 잡고 2~3회 흔들며 책상 밑에 붙어 있는 밥풀을 보라며 피해유아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는 행위를 함
판단	신체적 학대 인정
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요소	• 물리적 제지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나 밥풀을 책상 밑에 붙이는 행동은 그러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음 • 행위 시점에 위험 행동이 진행 중이지 않았고, 이미 종료된 행동을 문제 삼아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제지가 아니라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응징에 해당함 • 정리 정돈에 관한 사항은 조언 또는 주의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과도한 신체적 위해를 가함

판례 2

사건번호	2017고단486 판결
선고 법원 및 선고일	부산지방법원 2017. 7. 10. 선고
사실 관계	피고인은 유치원 담임교사임. K유치원 꽃님반 내에서 원생 16명을 상대로 인절미 만들기 체험을 하던 중 피해유아(4세)가 떡을 만지자 만지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자 플라스틱 반찬통으로 피해유아의 머리와 어깨를 몇 차례 침
판단	신체적 학대 인정
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요소	• 떡을 만지지 말라는 지시 자체는 활동 진행을 위한 정당한 지시이나, 유아가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지시를 반복하거나 행동을 제지하는 등 고시에 규정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신체적 위해를 가함 • 손에 들고 있던 물건으로 유아의 머리와 어깨를 치는 행위는 정당한 생활지도의 방법으로 볼 수 없으며, 유아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함

판례 3

사건번호	2018고단1137 판결
선고 법원 및 선고일	대구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사실 관계	유치원 교사인 피고인은 피해유아(4세)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최고기온 33.8℃인 날 10시 25분경 피해유아를 복도로 내보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같은 날 12시 3분까지 약 1시간 38분간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판단	방임 인정
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요소	• 분리 장소에서 분리된 유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도 및 지원할 교직원이 배치되지 않음 • 분리 장소가 최고기온 33.8℃에 달하는 날씨에 냉방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복도로 유아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장소에 해당함 • 분리의 시간이 약 1시간 38분으로 장시간 지속됨

판례 4

사건번호	2022노948 판결
선고 법원 및 선고일	울산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사실 관계	유치원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유아(3세)가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시끄럽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유아에게 잠시만 화장실에서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약 15분간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함. 피고인은 그 시간 동안 책상에서 업무를 보거나 다른 유아들을 지도함. 이후 피해유아는 화장실에 가는 것을 겁내기 시작하였고, 옷이나 이불에 소변을 보는 일이 생겼으며 새벽에 잠에서 깨어 “무서워”라고 하며 우는 모습을 보임
판단	정서적 학대 인정
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요소	• 화장실은 유아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장소이며, 사전에 지정된 분리 장소에도 해당하지 않음 • 분리 장소에 유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도 및 지원할 교직원이 배치되지 않음 • 분리 이후 화장실 기피, 야뇨증, 야경증 등 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과 관련된 구체적인 피해가 지속되고 있었음

2 서식 예시안

1 상담 관련 서식 예시안

활용 TIP

- 본 서식은 의무 서식이 아닌 참고용 예시로 유치원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간소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상담 신청 시 상담 목적, 희망 일시 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상담의 일시·방법을 협의하고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활용할 수 있음
- 상담 실시 후에는 상담 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 상담 이력을 관리하고, 상담 이후 생활지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기존에 사용하는 상담 신청서, 상담 일지 또는 관찰 기록 양식이 있는 경우 본 서식을 참고하여 필요한 항목을 보완·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음

서식 예시안

* 보호자 작성용

유아 상담 신청서

상담 희망 유아	유아 이름	나이	반
상담 신청 보호자	보호자 성명	유아와의 관계	전화번호
상담 방식	☐ 대면 상담	☐ 전화 상담	
상담 희망 일시	※ 수업 시간을 제외한 일과시간(13:00~16:30) 중으로 신청해 주세요.		
	▷ 1순위 ( )년 ( )월 ( )일 ( )시 ( )분		
	▷ 2순위 ( )년 ( )월 ( )일 ( )시 ( )분		
	▷ 3순위 ( )년 ( )월 ( )일 ( )시 ( )분		
상담 내용	☐ 교육활동 참여	☐ 생활 태도	☐ 교우관계 ☐ 기타( )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년 월 일

보호자: (인)

OO유치원장

유아 상담 기록지

상담일시	2000 . 00 . 00 (0요일), 00:00 ~ 00:00				
상담교원		반		유아 이름	
상담 요청자		상담 유형	방문 / 전화 / 기타		
상담 내용					
상담 결과					

유아 상담 일지

순번	날짜	이름	상담 주제	소요시간
1				
2				
3				
4				
5				
6				
7				
8				
9				

2 분리 관련 서식 예시안

활용 TIP

- 본 서식은 의무 서식이 아닌 참고용 예시로 유치원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간소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교실 밖 분리 시 일시, 사유, 장소, 시간 등을 기록하여 원장 보고 및 보호자 안내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분리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의 변화 등을 누적하여 기록하고 이후 생활지도에 참고할 수 있음
- 유치원규칙에서 정한 분리의 세부사항과 기록 항목이 일치하도록 조정하며 기록이 필요한 상황이나 범위는 유치원 여건에 따라 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서식 예시안

분리 지도 기록 일지

〈OO유치원〉

날짜	이름	사유	내용	장소	시간	지도교원
2000. 00. 00. (월)						

3 보호자 인계 관련 서식 예시안

활용 TIP

- 본 서식은 의무 서식이 아닌 참고용 예시로 유치원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간소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인계 절차와 방법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유아의 인계 시간과 인계받은 사람을 확인 및 기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서식 예시안

보호자 인계 관리 대장

〈OO유치원〉

날짜	이름	인계 교원	보호자 수임자	서명
2000. 00. 00. (월) 00시 00분				

4 물품 분리보관 관련 서식 예시안

활용 TIP

- 본 서식은 의무 서식이 아닌 참고용 예시로 유치원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간소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분리보관 대상 물품과 보관·반환·폐기 절차는 유치원규칙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물품의 보관 및 반환·폐기 등 관리 사항을 기록하고 확인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음
- 보호자 서명은 분리보관 사실과 반환·폐기 관련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

서식 예시안

물품 분리보관 기록지

〈OO유치원〉

유아 이름		반 명	
물품명 및 수량			
보관 기간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보관 장소	00실		
반환 일시	2000년 00월 00일		
폐기 일시	◆ 폐기 예정 사전 고지: 2000년 00월 00일		
	◆ 폐기 실시 일시: 2000년 00월 00일		
	◆ 폐기 사유 ☐ 보관 기간 경과 후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음을 표시함 ☐ 반환 요청 및 사전 고지에도 고지된 기한까지 수령하지 아니함		
보호자	성명: (서명)		

5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보호자 사전 안내문 예시안[1)]

활용 TIP

- 본 서식은 의무 서식이 아닌 참고용 예시로 유치원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간소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학기 초 보호자에게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유치원규칙으로 정한 분리·보호자 인계·물품 분리보관의 세부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
- 사전 안내는 생활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와 협력을 확보하고, 이후 생활지도가 실시되었을 때 불필요한 오해와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 제시된 안내문의 세부사항은 각 유치원이 유치원규칙에서 정한 실제 규정 내용으로 수정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가정통신문·알림앱·오리엔테이션 자료 등 유치원의 소통 방식에 맞게 형태를 바꾸어 분리 및 보호자 인계 등 생활지도에 관하여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음

서식 예시안

가 정 통 신 문	발 행 일	2000.00.00
	발 행 인	OO유치원
	전화(☎)	01-234-5678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치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7호)**가 시행됨에 따라,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유치원 구성원으로서 유아·교원·보호자가 각자의 책무를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모든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1. 유아생활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유아생활지도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며,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른 범위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당한 교육활동입니다.

▶ 생활지도 범위

생활지도는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생활 전반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서는 생활지도의 범위를 9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유치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생활지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이 예시안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한 보호자 안내문을 작성·활용한 5개 유치원(경기, 경남, 전북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 생활지도 방식

생활지도의 범위에 따라 교원은 유아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의 방식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2. 유아생활지도의 주요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제5조(조언)

교원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전문가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는 유아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찰·기록한 교원의 '전문가적 판단'을 근거로 실시됩니다.

▶ 제6조(상담)

교육적 필요로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 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원장과 교원, 보호자, 유아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과정입니다. 이는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근무 시간 외의 상담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 안내

1. 신청 방법: 1) 최소 3일 전,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님께 제출
   2) 담임 선생님과 소통하여 상담일시 확정 안내
   3) 협의된 일시에 상담 진행
2. 협조 사항: 1) 희망하는 상담 내용 상세히 작성
   2) 수업시간 외의 시간으로 상담 신청(상담가능 시간: 13:00~16:30)

▶ 제8조(훈육·훈계)

- 제지: 유아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껴안기, 손이나 팔 잡기 등 물리적 개입을 통해 안전한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 분리: 유아의 교육활동 방해로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할 때, 스스로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고 교육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지도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규칙의 분리 세부사항**

분리 방법	요건	장소	시간	지도 교원
제1호.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이동	조언, 주의, 지시, 제지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00실 ※ 학기 초 협의하여 교실 상황에 따라 지정	0분 ※ 학기 초 협의하여 유치원 여건에 따라 지정	00교원 ※ 학기 초 협의하여 유치원 여건에 따라 지정
제2호.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분리에도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거나 1호 분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00실 ※ 학기 초 협의하여 유치원 여건에 따라 지정		

- 보호자 인계: 제2호 분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가 필요할 경우 유치원규칙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자와 충분한 소통 후 가정학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아 인계 시 안전하게 유아를 인계하였다는 확인이 필요하여 유아를 인계받은 보호자 혹은 보호자가 지정한 인계자의 서명 후 인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물품 분리보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에서 소지와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분리 보관 물품에 대한 보관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반환을 받지 아니한 경우 물품을 폐기 조치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부패가 쉬운 음식이나 독성 물질 등은 자체 폐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분리·보관 물품 목록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가. 칼, 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도구
   나. 장난감 칼·총, 레이저 포인터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물품
   다. 성냥, 라이터, 고데기, 드라이기 등 화기류 및 전열기구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가.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일체
   나.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일체
3. 기타 소지를 금지한 물품
   가. 고가의 물품 및 고액의 현금 등 분실·도난 고위험 물품
   나. 녹음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
   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개인용품 및 음식물

✓ 물품 분리·보관 세부사항

<table>
<tr><th>호</th><th>분리 요건</th><th>보관 기간</th><th>보관 장소</th><th>처리 방법</th></tr>
<tr><td>1</td><td>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td><td rowspan="3">0일
※ 학기 초 협의하여 유치원 여건에 따라 지정</td><td rowspan="3">00실
※ 학기 초 협의하여 유치원 여건에 따라 지정</td><td rowspan="2">유아와 보호자에게 분리보관 사실 안내
요청 시 보관 기간 내 보호자에게 반환</td></tr>
<tr><td>2</td><td>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td></tr>
<tr><td>3</td><td>기타 소지를 금지한 물품</td><td>유아에게 분리보관 사실 안내
하원 시 보호자에게 안내 후 반환</td></tr>
</table>

※ 분리 보관 물품에 대한 보관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반환을 받지 아니한 경우 물품을 폐기 조치함
※ 부패가 쉬운 음식이나 독성 물질 등은 고지 후 자체 폐기함

2000. 00. 00.

OO유치원장

3 유치원규칙 예시안

활용 TIP

- 이 예시안은 고시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유치원규칙에 반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임. 유치원 여건과 유아의 특성에 따라 수정·간소화하여 활용할 수 있음

유치원규칙 예시안

OO유치원 규칙

제정 2000. 0. 0.
개정 2000. 0. 0.
개정 2000. 0. 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원의 교육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원은 "OO유치원"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 원은 OO시 OO구 OO번길에 둔다.

•
•
•

제O조(분리의 장소, 시간 및 지도 교원 등)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유아를 분리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리하는 경우 분리 장소에는 교직원 등이 있어야 하며, 분리 장소, 시간 등의 세부사항은 [표 1]에 따른다.

1. 교육활동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이동
2. 교육활동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② 교원은 제O항제2호에 따라 분리하여 생활지도를 한 경우 기록 등을 활용하여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표 1] 제O조제1항에 따른 분리 세부사항

분리 방법	요건	장소	시간	지도 교원
제1호.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이동	조언, 주의, 지시, 제지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00실 ※ 학기 초 협의하여 교실 상황에 따라 지정	0분 ※ 학기 초 협의하여 유치원 여건에 따라 지정	00교원 ※ 학기 초 협의하여 유치원 여건에 따라 지정
제2호.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분리에도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거나 1호 분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00실 ※ 학기 초 협의하여 유치원 여건에 따라 지정		

제O조(보호자 인계 절차 및 방법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른 유아의 안전 또는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를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자 인계의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표 2]에 따른다.

1. 유아가 제O항에 따른 분리 지도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유아가 제O항에 따른 분리 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표 2] 제O조에 따른 보호자 인계 세부사항

인계 요청	원장은 유아 상태 및 상황을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알리고 인계 요청
인계 전 보호조치	보호자 인계 시까지 유아는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되 원장·교원·교직원 등이 유아의 안전 및 상태 확인
유아 인계	보호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유아의 상태, 생활지도 경위 및 조치 내용을 설명 후 인계 사실 확인 후 유아 인계
후속 지원	보호자 인계 후 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행동 개선을 위하여 보호자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유아 지원
기록	보호자 인계 사유, 일시, 인계자 및 조치 결과 등을 기록하고 보관

제O조(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0. 그 밖에 원장 및 교원의 전문적 판단으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

제O조(금지된 행동)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각 호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유치원의 시설 및 물품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
3.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녹음, 녹화 등의 행위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

…

제O조(OOOO)

----------〈그 밖에 유치원에 필요한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발 행 일 2026년 9월

발 행 처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관 608호

연 구 진 김언경(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박건령(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서윤희(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오채선(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부경(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소연(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연수진(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장)
박강현(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교육연구관)
이명주(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교육연구사)

검 토 진 김의성(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

편집디자인 디자인여백플러스
Tel. 02-2672-1535

※ 사전 승인 없이 본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